



행정안전부

함께
행복
함께
행복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계약집행 특례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0(202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에 대응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4.8.)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4.14.)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를 통보하오니, 동 특례를 즉시 적용·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동 내용을 교육지원청, 학교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청(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담당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전문임기제 나
급 예법찬 행정사무관 최교신 회계제도과장 전건 2020. 4. 17.
김경태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798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2 팩스번호 044-204-8967 / ybchanya95@mail.go.kr / 대국민 공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비고
선금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 기존 선금특례에 따라 물품구매 계약도 최대 80% 선금지급 가능	'20.6.30. (신청일기준)	
	사용내역	(기존특례)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 용역계약은 선금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허용 (변경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 계약의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선금지급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심사 제외 가능	'20.6.30. (입찰공고일 기준)	

※ (주의사항) 기통보한(2.26.) 선금특례 적용기한을 '20.6.30.(선금신청일 기준)까지 연장하고,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기통보한 특례 및 신속집행요령 지속 시행